

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상 부의안전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																				
1	2003년도일반및 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세입· 세출 예산안	☐ 제안이유 · 국·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계속사업 등 주요 사업비 확보에 따른 세입·세출 조정이 불가피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 ☐ 주요골자 (단위 : 백만원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제2회추정 예산액</th><th>기 정 예산액</th><th>증 감 액</th><th>%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</td><td>1,188,182</td><td>939,085</td><td>249,097</td><td>26.5</td></tr> <tr> <td>일반 회계</td><td>708,858</td><td>663,582</td><td>45,276</td><td>6.8</td></tr> <tr> <td>특별 회계</td><td>479,324</td><td>275,503</td><td>203,821</td><td>74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제2회추정 예산액	기 정 예산액	증 감 액	%	계	1,188,182	939,085	249,097	26.5	일반 회계	708,858	663,582	45,276	6.8	특별 회계	479,324	275,503	203,821	74	기획예산과	각상임위
구분	제2회추정 예산액	기 정 예산액	증 감 액	%																				
계	1,188,182	939,085	249,097	26.5																				
일반 회계	708,858	663,582	45,276	6.8																				
특별 회계	479,324	275,503	203,821	74																				
2	성남시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설 치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	☐ 제안이유 · 지방재정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이나 공사의 용역은 중복심의를 받게 되어 불합리하며 용역과제 사전심의 대상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아 비효율적이므로, 심의대상 용역사업별 금액을 구체화하고 투·용자 심사 사업은 용역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· 심의대상용역을 1건당 3천만원 이상으로 구체화 · 지방재정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이나,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인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(안 제2조의2)	기획예산과	자치행정																				

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상 부의안건요약서

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3	성남시제2의견국 범국민추진위원 회설치및운영조 례폐지조례안	□ 제안이유 · 대통령 소속하의 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2003년 6월 23일자로 대통령령인 「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」과 국무총리령인 「제2의견국운동지원단규정」이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맞도록 성남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활동을 종료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· 동조례 폐지	총 무 과	자치행정
	성남시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설치및 운영조례제정안	□ 제안이유 ·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며, 타국생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주고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· 사업의 범위(안 제3조) -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-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애로 및 법률상담 - 외국인근로자의 문화활동개최 또는 장려 · 운영의 위탁(안 제5조제6조)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능력을 갖춘자와 3년간 위탁계약 · 지도감독(안 제9조) 시장은 수탁자의 복지센터 운영상황 전반을 지도·감독한다.	지역경제과	경제환경

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상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
5	성남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	□ 제안이유 - 국가보훈처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판정을 받은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국가보훈처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전우회의 개정건의를 행정자치부에서 수용·허가하고 시달한 「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」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 □ 주요골자 -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국가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및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감면 대상자와 동일하게 감면(안 제2조)	세 정 과	경제환경
6	성남시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	□ 제안이유 - 시유지상의 제일시장 건물을 (유)성남산업도매에서 점유하면서 임대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으므로,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후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직접관리하면서 재산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- 성남동사무소 이전부지를 주민이 원하는 위치로 변경 매입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-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건립을 위한 토지와,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으로 활용할 건물을 매입하여 외국인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장애인의 자활·자립기반을 마련하고 - 신흥3동지역 경로당 건립부지 소유자와의 매수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, 대체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며 - 태평2동 주변 주택단지 밀집지역에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	회 계 과	경제환경

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상 부의안건 요약서

연 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
		· 수정구 시흥동 체육공원 조성지역내 사유지(1필지)를 매입하여 향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공원기능 상실에 대비하며 · 공원로~우남로 도로개설 확장공사에 포함된 군 시설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3조및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이전 신축후 양여하고자 함. □ 주요골자 ○취득(매입) · 토지 : 7필지 2,157.1m²(653평) 3,464,424천원 · 건물 : 7동 8,321.71m²(2,517평) 3,270,515천원 ○양여 · 건물 : 5동 1,083.6m²(328평) 239,200천원		
7	성남시교통영향 평가의대상사업및 시설규모와교통유 발부담금부과시설 물의교통유발계수 적용지역지정에관 한조례폐지조례안	□ 제안이유 · 교통영향평가제도가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이관 통합제정(2000.12.31)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전면개정(2002.11.12)되었으며 ·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대상시설규모가 상세하게 구분 제시되어 있고 ·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가 도시규모별, 용도별로 세분하여 지정되어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함. □ 주요골자 · 동조례 폐지	교통행정과	도시건설

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상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
8	성남시분당구청 주차장위탁관리 동의안	□ 제안이유 ·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구청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왔으나, 인근 사무실·상가 이용자의 장기주차 및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많은 민원인이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,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·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함. □ 주요골자 · 위탁시설 - 위 치 :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- 주소지 :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2(수내동 1번지) - 주차면수 : 292면(일반216, 장애인용9, 경차전용40, 관용27) · 위탁업무범위(안 제2조) - 부설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유지에 관한업무 - 부설주차장 사용료의부과·징수 납부대행업무 - 부설주차장 사용에 따른 민원의 처리 · 수입금 조치(안 제8조) 수탁시설물에 대한 수입금 전액을 성남시 일반회계 세외수입계좌로 입금 · 대행사업비(안 제13조) 부설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는 해당부서의 장에게 대행사업비를 매 분기마다 청구	분 당 구 총 무 과	도시건설

'03. 제2차 의원 의정연수회 개최계획

-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으로 의정활동능력 제고
- 수해지역 위문·격려를 통한 지역 화합도모 및 대처방안 모색
- 의원간 정보교환 및 심신수련을 통한 화합도모

□ 방 침

- 의정활동 사례위주의 교과목 편성
- 이론과 실제사례에 정통한 지명도 있는 전문강사 초빙
- 의원상호간 친목도모와 교류시간의 최대한 할애
- 전문연수기관에 위탁운영으로 내실 있는 연수추진
- 수해지역위문·격려를 통한 지역 화합도모 및 대처방안 모색

□ 추진계획

- 기 간 : 2003. 10. 13(월)~10. 16(목) 【3박4일】
- ※ 출 발 : 2003. 10. 13 08:00(시청광장)
- 장 소 : 제주도
- 대 상 : 66명(의원 41명, 사무국직원 25명)
- 주 체 : 성남시의회
- 의정연수 : 연수기관 위탁
- 위탁교육 주문내용
 - 의정실문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알아야할 중요사항
 - 정치·경제 관계전문가 초빙 특별강연
 -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추진
 - 의정활동을 위한 심신수련 대회
 - 수해지역 위문